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숙려기간 연장 》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988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제안 경위

-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2. 7.
- (3) 회 부 일 : 2024. 2.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일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난 후에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생 후 7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입양에 관하여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가진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친생부모 등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u>7일</u> 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 ⑤ (생략)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① ----- ----- ----- ----- <u>15일</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각각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입양 및 국제입양 전반에 관하여 공적 관리 체계가 강화됨.

- 구체적으로 보면,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사후서비스의 제공 주체도 입양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양 관련 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사후관리 서비스 주체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와 양자를 결연하고, 중앙 당국 간 협의를 거치게 하면서 역시 사후관리 서비스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등 국가적으로 입양체계를 관리하려는 내용으로 개편되었음.

□ 한편, 현행과 같이 친생부모 등의 입양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한 것은, 입양 동의가 출산 직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직접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이 제공되어야 함(현행 「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예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¹⁾).

- 이에 따른 상담내용은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절차, 입양정보 공개 청구 등을 포함하며, 그 외 「아동 권리협약」 제21조(a)항에서도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이 부모, 친척, 후견인 등 입양동의가 요구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입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입양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 입양을 허가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입양 관련 친생부모 상담 현황²⁾ >

구분	'21.6 ~12월	'22년	'23년	'24년
입양상담 의뢰건수	243	305	296	185
입양조치 보호결정건수	106	170	147	69

출처: 보건복지부(지자체 제출자료 기준)

- 참고로 이러한 친생부모의 동의는 가정법원에 의한 입양허가가 있기 전 까지 철회할 수 있음(현행 「입양특례법」 제12조제5항 및 시행예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³⁾).

1) 다만, 현행 「입양특례법」은 상담 제공 주체를 ‘입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입양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상담 제공 주체를 ‘시·도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2) 현재 동의 후 철회 건수 및 철회 후 원가정 양육을 한 건수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상담의뢰 건수 및 상담 후 입양조치 보호결정 건수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가운데, 개정안과 같이 아동의 출생일부터 입양동의까지 보장되는 ‘7일’의 숙려기간을 ‘15일’로 연장하게 되는 경우 친생부모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한 후에 아동에 대하여 원가정 양육을 할 것인지, 입양 동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함으로써 친생부모의 동의권을 실효적인 측면에서 한층 강화하고, 원가정 직접 양육 우선 원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6조4)을 뒷받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경우에 따라 학업이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입양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15일 적용의 예외 규정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도 있어 보임.
- 관련하여, 현행 아동의 출생일부터 입양동의까지 보장되는 ‘7일’의 숙려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4호)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 참고로, 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입양 150명, 국외입양 79명 총 229명이 입양되었으며, 입양 아동 발생 사유로는 미혼모(부)가 7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기아동(23.6%), 이혼·부모 사망 등 가족해체(3.5%) 순이었음.

3) 국제입양에 관해서는 2025. 7. 19. 시행예정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함(제8조).

4)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3조제1항도 동일한 내용이나, 조 제목이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21~2023년 입양 현황 >

구분	2021	2022	2023
계	415	324	229
국내	226 (54.5%)	182 (56.2%)	150 (65.5%)
국외	189 (45.5%)	142 (13.8%)	79 (34.5%)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숙려기간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숙려기간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숙려기간 연장은 친생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 정부의 양육 지원 규모, 입양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500